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4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3년 12월 19일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의 정의를 수정하고 색깔 등의 규격이 포함된 제한표지판 규격도로 수정하는 등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정의 규정 수정(안 제2조제4호).
- 색깔 규격이 포함된 표지판 규격도로 수정함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 중 “규제표지판, 지시표지판, 보조표지판”을 “표지판”으로 한다.

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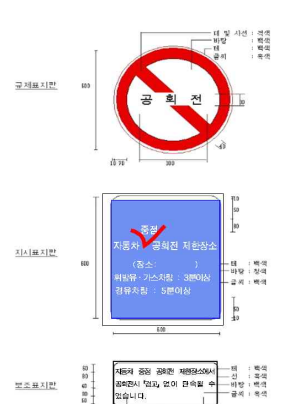


[별표]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(제3조제3항관련)



- 바탕 : 청색
- 원형 및 사선 : 적색
- 바탕 : 백색
- 글씨 : 흑색
- 테 : 백색
- 픽토그램(연기) : 흑색
- 테 : 흑색
- 바탕 : 백색
- 픽토그램(차) : 흑색
- 글씨 : 백색
- 글씨 : 회색

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”이란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<u>규제표지판</u>, <u>지시표지판</u>, <u>보조표지판</u>을 말한다.</p> <p>[별도]</p> <p><u>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(제3조제3항관련)</u></p>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]</p> <p><u>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(제3조제3항관련)</u></p>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표지판</u> ----- -----.</p> <p>[별표]</p> 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규제표지판, 지시표지판, 보조표지판”을 “표지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별도(別圖)”를 “별표”로, “제한표지판 중 하나 이상”을 “제한 표지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별도를 별표로 하고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설치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부터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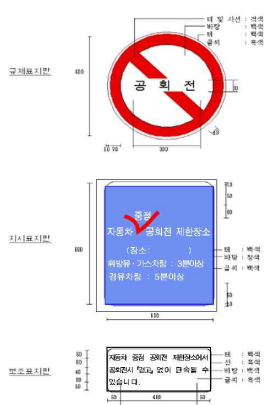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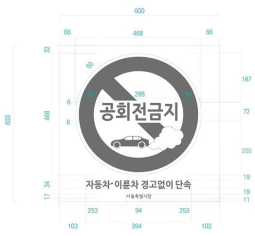
[별표]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(제3조제3항관련)



- 바탕 : 청색
- 원형 및 사선 : 적색
- 바탕 : 백색
- 글씨 : 흑색
- 테 : 백색
- 픽토그램(연기) : 흑색
- 테 : 흑색
- 바탕 : 백색
- 픽토그램(차) : 흑색
- 글씨 : 백색
- 글씨 : 회색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“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”이란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<u>규제표지판</u>, <u>지시표지판</u>, <u>보조표지판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제한장소 등) ① ~ ②(생 략)</p> <p>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<u>별도(別圖)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</u>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“<u>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</u>”라는 <u>보조표지판</u>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[별도]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(제3조제3항관련)</p>  </div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표지판</u>-----.</p> <p>제3조(제한장소 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별표</u>----- <u>제한표지판</u>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[별표]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바탕 : 청색 원형 및 사선 : 적색 방암 : 백색 글씨 : 황색 테 : 백색 픽토그램(연기) : 황색 테 : 백색 픽토그램(차) : 황색 글씨 : 백색 글씨 : 황색  </div>